



< 주치의 사업장 >

울산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지원 받아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입니다.

주치의 사업은 간단한 협약 체결을 통해 5개 직군의 전문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전공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들이 사업자응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사후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무료 건강 상담 및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5항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 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



< 전문교육 >

의학, 간호, 근골, 작업환경, 심리 5개 분야의 전문인력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개별 상담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이나 분야별 전문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원하시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및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

